

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의 견 서

(서호연 의원)

정원도시국장 이수연입니다.

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,
정원도시국 소관 사안으로
행정자치위원회 서호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
의안번호 제2742호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본 조례안은

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면제를 통해
고령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
것으로,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.

다만, 현재 일부 시설에 대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이미
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만큼,

75세 이상을 별도 우대할 경우 세대 간 형평성이나
저소득층·장애인 등 다른 취약계층과의 공정성에 대해
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

또한, 고령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수입 감소도
발생할 수 있어,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

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